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35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김태선 · 이용우 · 윤후덕
허성무 · 이병진 · 김주영
윤종균 · 박 정 · 허 영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가혹행위·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0조제6

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⑤ (생략) ⑥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신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신설>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 행위</u>
--	---------------